

경제적 평등, 정치적 평등, 문화적 평등 간의 조화 모색과 교회의 과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남 기 업(정치학 박사, 성균관대·아세아연합신학대 강사)

I. 문제제기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상호모순’이라고 하는 ‘토대’가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상부구조’를 규정짓는다는 마르크스의 오래된 명제를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어김없이 ‘빵의 문제’, 즉 ‘경제적 불평등’과 만나게 된다. 우리 사회의 ‘난제(難題)중 난제’인 교육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가 교육문제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보면, 교육문제는 교육부의 잘못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물론 교육문제를 관장하는 교육부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 부분은 분명히 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교육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질문해보자. 만약 우리 사회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취직하기 어렵지 않고, 몇 년간 열심히 저축하면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집을 사고 자동차를 굴릴 수 있다면, 어떨까? 그래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과외로 내몰려고 할까? 이런 상황에서도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자살하는 경우가 발생할까? 이런 질문을 하다보면 교육문제의 상당부분은 바로 ‘경제’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 우리는 밤중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성인용품’이라는 간판을 내 건 트럭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런 것을 보면 일단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그러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민하게 된다. 왜 저 사람은 저런 곳에서 저런 물건을 팔고 있을까? 차라리 막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질문해보면 어떨까. 도대체 어느 누가 어두컴컴한 도로변에서 그런 물건을 팔아가며 돈 벌고 싶어 할까? 어느 누가 그런 돈으로 자기 자식에게 공부 열심히 하길 바라며 용돈을 주고 싶을까? 취직자리가 없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다보면 결국 문제의 원인은 ‘일자리’, 즉 ‘경제’에 있다는 인식이 이르게 된다.

문화도 마찬가지이다. 겉모습만 보면 문화적 참여의 기회 불평등이 개인의 능력, 기호, 취미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심층적으로 그것의 원인을 찾아들어가다 보면, 문제는 역시 경제적 불평등에 있음을 알게 된다. 경제적 불평등이 개개인의 문화적 삶의 양과 질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문화적 참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본 글은 경제적 불평등, 다시 말해 심각한 빈부격차가 정치적 불평등과 문화적 불평등의 주된 원인이라는 생각 하에, 경제적 자유를 훼손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하면서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지공주의(地公主義, Geoism)’을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려 한다.¹⁾ 이

를 위해 II장에서는 본 글의 기본입장을 서술한다. 정치적 평등, 문화적 평등, 경제적 평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 결국 경제적 평등이 정치적·문화적 평등을 담보하는 핵심임을 살펴본 후, 하지만 경제적 평등은 경제적 자유와 조화를 이루어야 함을 지적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소유의 정당성 측면에서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 후, 그것에 지공주의가 가장 적합함을 보이고, 현재의 신자유주의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그것을 지공주의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도 알아본다. 마지막 IV장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평가해본 후,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본다.

II. 정치적 평등, 문화적 평등, 경제적 평등 간의 상관관계

1.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간의 관계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적 평등이라 함은 빈부, 연령,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회의 전 구성원에게 ‘1인 1표’가 주어졌다는 것으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다. ‘현재’라는 시점에서 보면 이러한 정치적 평등은 ‘자연스런(natural) 것’처럼 여겨지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인간사에서 ‘자연스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잘 알듯이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정치적 평등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에 의해서 성취된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귀중한 정치적 평등이 정말로 유의미하려면 ‘정치적 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한다. ‘정치적 자원’이란 미국의 정치학자 로버트 다알(Robert Dahl 1999, 230-1)이 말한 개념인데, 그는 이것을, “한 개인 혹은 그룹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의 태도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알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인간사회의 다양한 측면들은 모두 정치적 자원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가 예로 든 정치적 자원은 “물리적 강제력, 무기, 돈, 부, 재화와 용역, 생산적인 자원, 수입, 지위, 명예, 존경, 애정, 카리스마, 위신, 정보, 지식, 교육, 의사소통, 의사소통의 매체, 조직, 위상, 법적 신분, 교리와 믿음에 대한 통제” 등이 다. 그런데 이런 자원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이것들은 ‘경제적 부(富, wealth)’라는 토대위에 세워진 것임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정치적 자원이 불균등하게 배분된 것, 다시 말해 실제로 정치적 평등이 담보되지 못한 것은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야** 한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일부의 많은 부를 소유한 시민들이 국가의 정책, 결정,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

1) 지공주의는 19세기 후반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사상에 기초한 경제체제이다. 이 체제는 자원배분을 시장에 맡기면서, 토지의 가치인 지대를 정부의 최우선적 수입으로 하고, 즉 공유(公有)로 하고, 노동과 임금에 대해서는 더 많은 사유(私有)로 하는 것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남기업 2004; 김윤상 2005). 이러한 지공주의는 성경의 ‘희년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본 글은 지공주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일반적 관점, 즉 소유의 정당성 측면, 경제적 효율성 측면, 형평성 측면에서만 검토한다. 지공주의가 얼마나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전강수·한동근(2000)을 참조하라.

국 민주주의,²⁾ 즉 정치적 평등의 근본 의미는 퇴색하고 ‘소수의 지배’로 전락하게 된다.³⁾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정치적 평등 의 대명사인 ‘선거의 작동과정’을 들여다보자.

두말할 필요 없이 선거가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됴됨이와 정책을 잘 비교해보아야 한다. 그래야 ‘도토리 키 재기’를 해서라도 보다 나은 사람이 시민의 대표로 선출될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유권자들이 출마 후보들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적·물질적·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흔히 선거가 ‘축제의 날’이라고 하지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들에게 주기적으로 돌아오는 선거는 그저 ‘쉬는 날’, ‘그들만의 축제의 날’로 보일 뿐이다. 이렇게 되면 조직과 돈을 동원한 불량한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는데, 선거가 이런 과정으로 전락하면, 결국 ‘주권재민(主權在民)’으로 요약되는 민주주의는 서서히 기형적인 모습으로 변질되어간다.

한편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이면 누구나 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있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서는 아무나 피선거권자가 될 수 없다. 재정적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대표와 책임’의 원리를 구현하는 선거는 국민전체를 ‘대표’하고 ‘책임’지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일부 특정 계층만 ‘대표’하고 ‘책임’지는 행사로 전락하기 쉽게 된다. 요약해보자면 정치적 평등은 경제적 평등이 담보되지 않으면 형식적·선언적 수준에 그치기 쉽다는 것이다.

2. 문화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간의 관계

문화적 평등도 마찬가지로이다. 전술했다시피 문화적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불평등한 것은 개인의 능력, 기호, 취미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것은 주로 경제적 불평등에서 기인한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가 향유하는 문화와 그렇지 않은 자가 접근하는 문화는 양(量)과 질(質)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경제적 불평등이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경제적 불평등은 문화 자체를 병들게 하기까지 한다. 이것을 문화 생산과 소비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먼저, 경제적 불평등은 양질(良質)의 문화가 소비되고 생산되는 것을 어렵게 한다. 한 사회에 건강한 문화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양질의 문화가 사람들에게 의해서 계속적으로 소비

2) 민주주의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달려있는 데, 주로 주기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보통선거권, 정당결사의 자유, 집회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의 ‘정치적 평등’을 민주주의라고 하는 쪽과, 평등을 사회 경제적 의미까지 확장하려고 하는 쪽이 있다. 흔히 전자를 ‘절차(혹은 형식)적 민주주의’, 후자를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한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주의는 전자에 한정한다.

3)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평등을 위협한다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많은 저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고대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수의 가난한 자로서는 민주주의제도, 즉 정치적 평등이 제대로 정착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사회에서 중산층이 두텁게 형성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Aristotle 1992). 또한 근대의 루소(Rousseau 1994, 3권 4장) 역시 경제적 평등을 온전한 민주정치에 한 요소로 간주하였다. 요약하면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정치적 평등이 위협받고 결국 민주주의 내용이 허약해진다는 것이다.

되어야 함은 불문가지(不問可知)다. 그렇게 해야 문화 생산자들도 재정적 걱정에서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고, 문화 생산에 재능 있는 자들이 계속 충원될 수 있다. 그러나 양질의 문화를 소비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먹고살 정도가 되어야 문화적 소비에 관심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돈이 없으면 극장에 가서 좋은 영화를 볼 수 없고 연극이나 각종 공연을 관람할 수 없다. 기껏해야 쉬는 날에 비디오를 빌려보는 수밖에 없다.

두 번째로 경제적 불평등은 퇴폐적인 문화를 양산하도록 자극한다. 불로소득(不勞所得)이 극소수에 집중되는 경제적 불평등이 극심한 사회,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퇴폐적인 문화가 확대 재생산되기 마련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고 그것으로 자기 삶을 꾸려갔을 때, 건강한 정신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도 엄청난 불로소득을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는 퇴폐 향락적인 문화가 생겨나기 쉬워진다. 그런데, 이것이 더욱 더 비극적인 이유는 퇴폐 향락문화를 소비하는 주체가 **불로소득을 향유하는** 부유한 자들인 반면, 이들의 문화생활을 시중(?)드는 자들이 그 불로소득의 피해자인 빈곤한 사람일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아무리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 그런 사람이 한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회에서는 일순간에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도박’에 끌리게 마련이다. 현재 ‘인생역전’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새 우리에게 친숙해진 로또 복권, 바로 얼마 전만 해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 사행성 산업은 경제적 불평등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진행되는 불건전한 문화를 차단하고 건강한 대안문화를 만드는 운동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천문학적인 불로소득을 어디에다 쓸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회에서, 이들이 소비를 해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설파하는 사회에서,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전혀 안 보이는 사회에서는 저급한 문화의 수요자는 넘쳐나게 마련이고,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퇴폐 향락문화는 ‘○○○산업’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당당하게 등장하게 된다. 이런 현실에서는 대안문화운동에 대한 헌신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경제적 평등은 경제적 자유와 결합해야

이처럼 정치적 평등, 문화적 평등을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을 구현해야 하지만, 경제적 평등은 경제적 자유와 조화를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강조하면 평등이 훼손되어 사회의 공동체적 유대감(solidarity)이 위축되고, 역으로 평등에 집착하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받게 된다는 데 있다. 신자유주의⁴⁾는 ‘자유 안에서의 평등(equality in liberty)’를 말하나, 여기서의 평등은

4) 본 글에서 신자유주의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와 그에 따른 요소소득에 대한 사적소유를 기본으로 하면서 자원배분을 시장에 방임하는 체제로 정의한다.

‘실질적 평등’이 아니라 ‘형식적 평등’에 그치고 있고, 반대로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⁵⁾는 인간의 자유를 지나치게 간과했으며,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키려고 했던 복지국가(사민주의⁶⁾)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이기는 했으나, 평등이 개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더 크게 신장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역사를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개의 가치를 조화하려는 노력의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박호성 1994, 13), 현재로서는 조화에 대한 당위론적 언급은 있으나 그것이 시대와 상황에 적합한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측면에서 평등과 자유를 결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래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지공주의’가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한다.

III. 경제적 측면에서의 평등과 자유의 새로운 결합 모색

1. 소유의 정당성에서 찾는 평등과 자유의 영역

본 절에서는 소유의 정당성이란 측면에서 평등의 영역과 자유의 영역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그것의 새로운 결합을 도출해 내어, 그 결과가 지공주의와 일치한다는 것을 보이려고 한다. 필자가 소유의 정당성을 통해서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조화를 도출하려는 이유는 이 방법이 가장 근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 방법을 잘 활용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영역에서 평등이, 어느 영역에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소유의 정당성 검토도 추상적 수준의 논의에만 머무르면 확실성이 부족하여 시도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 예컨대, “자유와 평등은 인간에게 있어서 필수적 가치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내용은 이 둘을 조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선언이 될 수 있지만, 여기서 ‘조화시켜야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하지 않으면 공허할 수 있다.⁷⁾ 이런 추상적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필자는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의 3요소와 그에 따른 요소소득을 구분하고 각각의 영역에서 자유와 평등의 영역을 도출한다.

1) 토지와 지대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 토지는 평등의 영역

5) 본 글에서 사회주의는 생산의 3가지 생산요소 중 토지와 자본은 국유화하고, 3요소의 요소소득의 대부분은 국유화하여 재배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원배분을 시장에서 ‘계획’으로 대체하는 체제로 정의한다.

6) 본 글에서 사민주의는 생산의 3요소와 요소소득에 대해서 공유와 사유를 혼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원배분은 시장을 중심으로 하되 국가가 시장의 불완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조정하는 체제, 즉 시장과 계획을 혼합하는 체제로 정의한다.

7) 이런 뜻에서 오네일(O'Neill 1989, 186)은 “도덕적 원칙 없는 경제학적 평가가 허약(*impotent*)한 것처럼, 경제학적 평가 없는 도덕적 원칙도 공허(*empty*)할 수 있다”고 하였다.

사유재산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현대 국가는 토지와 지대의 사적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학자는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로 불리는 로크와 노직이고, 두 학자의 주장은 주로 ‘불평등을 야기하는 사유재산제’가 정당하다는 논리로 활용되어왔다(Sreenivassan 1995, 4). 토지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와 신체에 대한 개인소유가 유의미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두 사람의 핵심 주장에 토지와 지대를 대입하면 토지는 사유(私有)할 수 있지만, 토지에서 나오는 이익인 지대는 공유(公有)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다시 말해 토지는 평등의 영역이라는 것이다. 이것의 논리를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자.

먼저 로크의 소유권 논리를 통해서 알아본다. 그의 소유권 논리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것”, 이른바 ‘자기 소유권(self-ownership)명제’이다. 신체에 대해서는 본인 외에 아무도 권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Locke 1990, 50).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공유물로 주셨다”는 것이다(Locke 1990, 49). 그리고 마지막은 ‘공유물인 자연에 자신의 노동을 투여하면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다(Locke 1990, 50).

그러나 로크는 다른 것과 달리, 토지를 사유하기 위해서는 만족시켜야 하는 ‘단서(Locke’s proviso)’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토지에 노동을 투하해서 자기 소유로 삼을 수 있으려면 “공유물인 자연(토지-필자)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것들로 남아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는 ‘충분단서(sufficiency proviso)’이다(Locke 1990, 54). 로크가 토지소유에 대해서 이런 단서를 둔 이유는, 어떤 사람의 토지의 사유화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통해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어느 토지를 개량함으로써 그 토지를 자신의 것으로 하는 행위는 다른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 동일한 양의 토지가, 토지를 갖지 않는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정도보다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Locke 1990, 53)이라고 할 정도로 자신이 제시한 ‘단서’를 의식하였다.

그러나 충분단서는 인구가 토지에 비해 희소한 상태일 때 적용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수 있지만, 그 반대인 상태에서는 이 단서를 적용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로크는 사유화하여 잘 활용하는 것이 충분단서를 만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⁹⁾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분히 좋은 것들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경제학적으로 말하면 ‘지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충분단서를 가장 잘 만족시키는 방법은 지대를 공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같은 농기구로, 같은 날씨 속에서, 같은 시간의 노동을 투여했는데 최상급지에서는 100가마, 그 다음 등급에서는 90가마, 최열등지에서는 80가마의 쌀이 생산된다고 한다면, 최상급지는 20가마, 다음 등급지는

8) 이 명제는 논증하기 불가능한 자연권적 개념으로서, 물즈의 것과 대비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로크의 전제하에서 토지소유권의 정당성을 논하는 중이므로 일단 이 전제를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9) 김남두(1990, 170-71)는 ‘변화된 로크의 단서’에서는, 적어도 재산 형성에 있어서 모든 이에게 동일한 조건이 주어질 수 없다고 보고 ‘단서의 변화’를 비판하였다. 즉, 사유재산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공유지를 사유화해야 하는 사람과 이미 사유화된 조건 아래서 자신의 사유 재산을 획득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것이다.

10가마, 최열등지는 0가마가 ‘지대’이므로, 그것을 환수하여 공유하면 어디서 농사를 지어도 생산물은 똑같아지게 되고, 따라서 충분단서는 자연스럽게 만족된다. 따라서 지대를 공유하는 로크보다 더 ‘로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노직의 소유권 원리를 통해 토지와 지대의 소유권을 살펴보자. 주지하다시피 노직은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자(libertarian)로서 롤즈와 대비되는 현대의 정치철학자이다. 롤즈의 『정의론』(A Theory of Justice)을 비판대상으로 설정한 그의 주저 『자유주의 정의론』(Anarchy, State, and Utopia)의 핵심 내용은 소유권에 있다. 그가 최소 국가론(minimal state)을 주장한 것도 자신이 주장한 소유권을 옹호하려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그는, 비록 로크가 노동을 통해서만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¹⁰⁾ 자신의 소유권리론(entitlement theory)의 논거를 로크의 그것에 두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가 말하는 정당한 소유권리는 소유물의 최초 취득과 이전 과정이 올바른 절차를 따랐을 때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현재의 소유 상태가 이 두 원리에 의거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불의를 교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것을 ‘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교정의 원리’라고 부른다(Nozick 1991, 236-37). 그는 국가가 만약 이 원리 외에 다른 원리, 예컨대 재분배를 시도한다면, 그것은 개인에게 강제노동을 시키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자유가 침해받는 것이기 때문이다.¹¹⁾

노직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원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의 원리’이다. 그의 소유권론에 따르면 취득이 잘못되었을 경우 ‘교정의 원리’에 회부되어야 하므로, 최초의 취득이 정당했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로크가 노동소유권을 주장할 때 충분단서를 제시했기 때문에, 노직은 취득의 원리에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로크의 충분단서를 자신의 논리에 맞게 새롭게 해석한다. 그래서 노직은 로크의 단서를 “타인의 상황이 악화되지 않을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Nozick, 1991, 222)으로 규정하고, 만약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소유되지 않은 사물”인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로 인해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그 사물(토지-필자)을 더 이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악화”되었다면, “그런 소유권은 발생되지 않았을 것”(Nozick 1991, 273)이라고 말한다.

따라서 노직의 논리에 따르면 토지의 사유화가 ‘무주물(owned things)’¹²⁾ 상태에 비해 어느 누구의 처지도 악화되지 않는다면 정당한 것이 된다. 또한 그는 만약 “어떤 사람의 사유화가 이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었다 할지라도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도록 배상한다면 그의 사유화는 허용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거기에 “그가 이 타인들에게 배상하지 않는다면, 그의 사유화는 취득에 관한 정의원리의 단서를 위반하는 것이자 부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Nozick 1991, 273). 그러므로 노직의 소유권론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10) 노직은 로크의 노동만을 통한 소유권 옹호에 대해 “만약 내가 한 깡통의 토마토 주스를 소유하고 있어, 그것을 바다에 부어 그 분자들이 바다전체에 골고루 퍼지도록 한다면, 나는 이로써 소유하게 되는가, 아니면 어리석게도 나의 토마토 주스를 낭비해버린 것이 되는가?”(Nozick 1991, 268)라고 의문을 제기하였다.

11) 이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 노직은 칸트의 “타인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라”는 언명(言明)을 활용한다. 다시 말해, 재분배는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김비환 2002, 28-9).

12) 로크는 자연자원을 포함한 토지를 ‘공유물’이라고 한데 반해, 노직은 ‘무주물’이라고 정의하였다.

천부적인 토지를 소유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삶을 악화시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Cohen 1986, 123).

로크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노직의 단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대를 공유하는 것이다. 토지는 필요하면 만들 수 있는 자본과 달리 ‘부증성(不增性)’과 ‘비동질성(比同質性)’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한 사람의 소유는 타인에 대한 배제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타인을 배제한다는 것은 노직의 말로 하자면 타인의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교정의 원리에 회부되어 배제의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지대의 공유이다. 따라서 사유재산권을 강력히 옹호하는 노직의 입장을 보더라도 토지는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 노직보다 더 ‘노직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지대공유는 지대가 어떻게 발생하느냐를 보면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토지의 가치는 ‘위치’로 결정되는데, 위치의 차이는 개별토지소유자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자연적, 사회경제적, 정부적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 ‘자연적 원인’이라 함은 예컨대 수려한 경관과 같이 천부적으로 주어진 것에 의해서 가치가 발생·상승하는 것을 말하고, ‘사회경제적 원인’이라 함은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서 자연스럽게 중심지, 주변지, 한계지가 형성되어 가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적 원인’이라 함은 정부가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도로와 학교, 가로등, 경찰서, 기차역 등을 건설하기 때문에 토지가치가 발생·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토지가치인 지대는 사회 전체의 노력에 의해서 발생·상승하므로 원칙적 소유자는 그것을 생산한 ‘사회’라고 해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노력과 기여에 대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보는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에도 정확히 부합하는 것이다.¹³⁾

결론적으로 말하면 토지는 평등의 영역이고, 이것을 가장 잘 실시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의 요소소득인 지대를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것이다.

2) 노동과 임금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 노동은 자유의 영역

노동한 사람이 노동의 산물인 임금을 소유해야 한다는 명제는 토지와 지대의 소유권처럼 노동한 사람이 그것의 결과물을 소유한다는 노동소유권, 더 나아가서 자기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정될 것 같다. 하지만 이것에도 상당한 이견이 존재한다. 이견은 주로 자기소유권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다. ‘자기소유권’을 옹호하는 로크와 노직 류의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임금에 대한 절대적 사유를 주장하는 반면, 자기소유권을 부정하는 롤즈와 드워킨(R. Dworkin) 류의 ‘균형적 자유주의’¹⁴⁾의 입장에서는 임금이 재분배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검토해보면 노동의 임금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은 롤즈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하더라도, 롤즈와 대척점에 있는 노직의 주장과

13) 지대가 개인의 노력의 대가가 아닌 불로소득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Smith(1998, 55), Ricardo(1991, 278)을 보라.

14) 김비환(2005, 63-87)은 롤즈와 드워킨을 ‘균형적 자유주의자’로 분류하였다.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면 먼저 노직과 롤즈의 상충성 논리부터 살펴보고, 그것이 어떻게 유사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자.

임금에 대한 소유권에 있어서 롤즈의 근본적 문제제기는 노동하는 개인들의 노동능력을 그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것이다. 그는 개인의 능력이 순전한 개인의 노력의 결과물이라기보다, 사회에서의 출발점, 자연적으로 부과된 유리한 특성들, 그리고 역사적인 우연성 등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 받는다고 보고, ‘노력’ 혹은 ‘공적(desert)’에 의한 분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였다(Rawls 1985, 325-6). 이런 관점에서 그는 도덕적으로 볼 때 임의적(arbitrary)인 선천적 특성들을 배제시킬 수 있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과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를 도입하여,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합의할 정의로운 분배원칙을 도출한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도출한 분배원칙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제 1원칙은 모든 사람이 ‘평등한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천명이고, 두 번째 원칙은 평등한 자유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해 줄 수 있는 ‘차등의 원칙(difference principle)’이다. ‘차등의 원칙’이란 인간의 자유는 ‘차이’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차이’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 ‘차이’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도덕적으로 임의적 요인에 의한 것이므로 어떤 식으로든 보상해야 한다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원칙이다. 다시 말해, 임의적 요인에 의한 불평등, 예컨대 선천적으로 좋은 능력을 타고났다면, 혹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의 노력의 산물에 대한 사유는, 불리하게 조건 지워진 최소수혜자(the least advantaged group)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때에만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흔히, 롤즈의 분배원리에서 제1원칙은 자유민주주의에서의 자유에 대한 강조로 간주되고, 차등의 원칙을 약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박호성 1994, 121-2), 이런 관점은 제1 원칙인 ‘평등한 자유’가 바로 칸트의 ‘자율성’에서 도출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다시 말해서 롤즈의 입장에 따르면 임금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재분배’를 해야 하는 것이다.

한편 노직은 흥미롭게도 칸트의 입장에서 롤즈의 주장을 반박한다. 노직의 주장은, 롤즈의 분배원리대로 하면 결국 사람들의 ‘상황적 특성’에 따라 부와 기회를 분배하게 되므로 국가는 일정한 ‘분배의 패턴’을 채택할 수밖에 없고, 그 패턴에 따르면 국가는 “타인을 나의 이익추구의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칸트의 도덕률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롤즈가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한 가치로 파악하여 개인들 사이의 분리성과 독립성을 당연시하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 사이의 분리성과 독립성을 무시함으로써 유능하고 부유한 사람들을 극빈층의 복지를 향상시켜주는 ‘수단으로 전략 시킨다’는 것이다(김비환 2002,

15) 칸트의 윤리학에서 롤즈가 중요한 토대로 삼은 것은 ‘인간의 자율성’이다. 그는 인간의 의지가 그 의지 자체를 넘어서는 특수한 조건들 속에서 추구된다면 그 결과는 항상 타율적일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홍성우 1991, 132).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사회적 지위나 천부적 자질, 특정한 종류의 사회에서 파생된 원칙들에 근거하여 행동한다는 것은 ‘타율적 행위’에 다름 아닌 것이다. 이와 같은 칸트의 윤리론에 기초해서 롤즈는 칸트가 중시한 개인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옹호하기 위하여 타율적 인자들을 배제시킨 원초적 입장에서 분배원리를 추출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개인의 자율성의 핵심 내용인 ‘독립성’과 ‘개체성’을 보장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차등의 원칙은 약하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김비환 2002, 11-15).

28-9). 이에 대한 롤즈의 입장은 개인들이 타인들의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자존감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개인들이 자신의 분리성과 독립성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차등의 원리’에 의한 재분배는 필수적이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롤즈와 노직을 중심으로 하는 임금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 논쟁은 관점에 따라 다르고, 그 관점은 또 다른 관점에 의해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술했다시피 관점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차이점은 ‘자기소유권에 대한 인정/불인정’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롤즈의 입론이 노직의 그것보다 공정성을 담지하기 위한 ‘절차’라는 차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황경식 1997, 94-104), 그렇다고 해서 노직의 입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두 사람의 근본적 차이를 초래하는 노동에 대한 소유권인 ‘자기소유권’은 논증 불가능한 ‘자연권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논증이 불가능한 ‘진계’에서는 ‘선택’만 있을 뿐이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현대사회에서 노직의 주장보다 롤즈의 주장이 더 매력적이고 호소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롤즈의 입론이 가지는 절차적 엄밀성이나 공정성 때문이라기보다는 ‘현실적 요청’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빈부격차, 실업 등의 현실적 문제가 재분배를 정당화하는 롤즈의 분배원리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시장은 빈부격차를 확대시키고 빈자들의 기본적 필요를 거의 충족시키지 못하다고 평가되는 시스템이다. 그런데 이런 현실에 주목하지 않은 채, 노직처럼 단지 자신이 설정한 원리(취득의 원리, 이전의 원리, 보상의 원리)에만 집착하여, 그러한 불평등의 해결을 개인의 자선이나 구휼(救恤)에 내 맡기는 것은 논리적 측면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반면에 롤즈의 입론에는 위와 같은 ‘불평등’에 대한 고려가 배어있다. **요컨대**, 롤즈의, 형평성이 결여된 시장이 결국 인간의 평등한 자유의 내용을 심각하게 제한하기 때문에, 국가는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회의 기본구조를 구성해야한다는 주장은 노직의 논리보다 인간적이고 정의롭게 다가오는 것이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의 주장을 유사하게 만들 수 있는 단서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롤즈와 노직의 주장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이라는 더 위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노직은 모든 생산요소와 요소소득에 대한 사적소유를 전제한 자유방임주의를 옹호하는 사상이고(Nozick 1991, 278), 롤즈는 자유방임주의적 시장의 부작용들을 염두 해 둔 상태에서 자신의 논리를 전개해 나간다.¹⁶⁾ 그러나 앞에서 입증한 것처럼 두 사람의 핵심 주장에 더 부

16) 롤즈 스스로가 『사회정의론』에서 가정한 시장이 ‘신자유주의적 시장’이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그것을 추정할 수가 있다.

“... 더욱이 시장의 실패와 불완전성은 종종 심각한 것이며 이를 보상하는 조정이 할당처(allocation branch)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독점적 제약, 정보의 결여, 외부 경제(external economics)와 불경제(diseconomies) 등이 인정되어야 하며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시장은 공공선의 경우에 완전히 실패하게 된다.”(Rawls 1985, 288)

위에서 언급한 “독점적 제약, 정보의 결여, 외부경제(external economics)와 불경제(diseconomies) ... 공공선의 경우에 완전히 실패” 등은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특징들이다. 지공주의적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해소된다.

합하는¹⁷⁾ 토지의 가치를 공유하는 ‘지공주의적 시장’이라는 터 위에서도 임금에 대한 노직과 롤즈의 주장이 상반될까? 필자가 보기에는, 비록 롤즈와 노직이 전제하는 인간관과 분배절차가 상이하더라도 지공주의적 시장에서 노동의 임금에 대한 두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 안은, 결국 상당히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장 3절에서 자세히 검토되었지만 지공주의적 시장에서는 신자유주의적 시장보다 빈부격차와 실업문제가 상당한 정도로 해소되고, 적은 자본으로도 시장진출이 훨씬 용이하며, 실질임금이 **향상되기 때문에**, 롤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등한 자유’라는 ‘형평성’이 **상당히** 제고될 수 있다.¹⁸⁾ 이런 것은 롤즈가 분배정의에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공평한 기회균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발판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해 지공주의적 시장이 롤즈의 분배정의의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제2원칙에서 고려해야 하는 ‘최소수혜자’의 수는 크게 줄어들 수 있게 한다. 차등의 원칙을 통해 그가 확보하려고 했던 인간 개개인의 자율성, 개체성, 독립성은 지공주의적 시장 자체 내에서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지공주의적 시장에서는 자기소유권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노직과 롤즈 두 사람이 공히 중요하게 여기는 “타인들을 도구나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않고 목적으로 대우하라”는 칸트의 대명제가 실제적으로는 보장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1> ‘지공주의적 시장’에서의 임금에 대한 소유권

노동/임금	자유지상주의(노직)	균형적 자유주의(롤즈)
노동(자기소유권)	긍정	부정
임금	완전사유	약간의 공유

결론적으로 말해서, 신자유주의적 시장에서 롤즈와 노직의 임금에 대한 주장은 자기소유권에 대한 입장 차에 따라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지만, 두 학자의 명제를 통해서 도출되는 ‘토지가치공유’를 기본으로 하는 지공주의적 시장에서는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롤즈류의 균형적 자유주의가 ‘약간의 공유’를 주장할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지공주의적 시장이라 하더라도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신체적 장애 등을** 가진 개인들의 ‘기본적 필요’를 다 **충분히** 충족시킨다고 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필자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노동의 임금은 ‘완전 사유’와 ‘약간의 공유’, 즉 자유의 영역이라고 결론짓는다.

3) 자본과 이자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 자본은 자유의 영역

정치경제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 자본과 이자¹⁹⁾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 논쟁만큼 극단적으로

17) 노직과 토지소유권과의 관계는 앞에서 다루었고, 롤즈의 소유권 논리에 토지를 도입하면 ‘지대 공유’가 도출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김운상(2003)을 참조하라.

18) 지공주의의 효율성에 대한 검토는 본 글 Ⅲ장 3절을 참조하라.

19) 보통 자본에 대한 요소소득을 ‘이윤(profit)’라고 정의하나, 이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자본가의 노동

대립되는 것도 드물다. 주류 경제학 쪽에서는 자본과 이자가 저축과 노력의 산물이므로 ‘사적 소유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반면, 좌파인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착취의 산물’로 본다. 따라서 둘 사이의 절충점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관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으나, 소유의 정당성을 논하는 마당에서 이런 ‘관용’은 적절치 않다. 필자의 관점은 주류 경제학 입장에서 있다. 즉 자본과 이자에 대한 소유권은 노력의 산물이라고 보아 임금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과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여기서 필자가 이런 관점을 가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잉여가치론을 비판하고 주류경제학적 관점이 옳다는 것을 논증해야하나, 이것은 지면관계상 여기서 상론하기 어려울 것 같다. 다만 필자가 잉여가치론을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짧게 서술하도록 한다.²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잉여가치론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는 류동민(1995, 287)이 말하듯, “노동가치론 자체가 논리적으로 증명되거나 반증될 수 없는 증명 불가능한 공준(postulate)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가치의 실체는 노동이며 상품과 자본의 가치는 노동시간으로 측정된다.’는 전제를 수용하면, 자본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할 뿐이며 자본과 그의 요소소득인 이자(이윤)가 ‘노동착취의 결과’라는 결론은 이미 예상되어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로머(John Roemer)는 잉여가치론은 “설명이 아니라 동어반복에 불과하다”고 하였다.²¹⁾ 즉, “노동만이 가치를 창조한다.”는 명제와 “잉여가치의 원천은 잉여노동”이라는 명제는 증명이 아니라 선언이라는 것이다(강신욱 1998, 42). 잉여가치론이 이렇게 하나의 증명되지 않은 전제에서 도출된 것이라면, 그것의 오류를 증명하는 방법은 이론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논리적 정합성’과 ‘현실설명력’을 검토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잉여가치론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잉여가치론의 하부개념인 ‘사회적 필요노동’, ‘숙련/비숙련 노동’, ‘생존비임금론’ 등과 잉여가치론과 충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논리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잉여가치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즉 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가 살아있는 노동에서 나온다면, 왜 자본가가 노동을 가치를 이전하는 역할만 하는 기계(자본)로 갈아치우지를 설명할 길이 없다. 다시 말해 현실설명력도 떨어진다는 것이다.

한편, 지금까지 자본생산성으로 자본과 이자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주류경제학도 ‘동어반복’이라는 난점들이 있지만, ‘현실설명력’이라는 관점에서는 잉여가치론 보다 뛰어나다는 점을 들어, 필자는 자본과 이자에 대한 소유의 정당성은 임금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리려 한다. 따라

에 대한 대가인 ‘임금’과 토지의 ‘지대’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것을 각각의 요소소득으로 귀속시키고 나면, 결국 자본 사용에 대한 대가만 남게 되는 데, 필자는 이것을 ‘이자(interest)’라고 정의하였다.

20) 자세한 내용은 남기업(2004, 79-100)을 참조하라.

21) 로머(Roemer 1988 50-4; 이재울 1995, 198)는 노동가치론을 부정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아닌 다른 가치척도재(numeraire)를 채택해도 이윤이 존재함을 보이면서, 이윤의 원천이 노동력의 착취에서 발견된다는 마르크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예를 들어 곡물을 가치척도재로 선택한 경우, 1단위의 곡물을 생산하는 데 1단위 미만의 곡물이 투입된다면, 곡물도 역시 착취 가능한 속성을 가지며, 이것은 이윤이 존재할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빵과 포도주의 교환을 예로 들면서 빵과 포도주에 같은 노동을 투여해도 시간이 지난 포도주가 더 많은 빵과 교환된다면 그것은 포도주가 빵을 착취한 것이 된다고 하였다. 이런 논의를 거쳐 로머는 “추상적 노동만이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착취론은 더 이상 머무를 필요가 없는 집이며, 그곳에서 자란 가족들 - 축적이론, 지배이론, 소외이론 등 - 은 이제 그 집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강신욱 1998, 87에서 재인용). 그리고 노동가치론의 이런 특성 때문에 로빈슨(Joan Robinson) 여사는 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은 “해결적인 잡꼬대”라고 비판하였다(Meek 1985, 288에서 재인용).

서 자본과 이자는 **노동의 임금과 마찬가지로** ‘자유의 영역’으로 간주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를 통해서 우리는 토지에서는 평등 즉 공유, 노동과 자본에서는 자유, 혹은 사유와 사유를 기본으로 한 약간의 평등, 다시 말해 완전 사유 혹은 약간의 재분배라는 결론을 얻었다. 이런 결론은 서론에서 언급한 지공주의와 거의 합치하는 것인데, 이로써 우리는 지공주의가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를 새롭게 결합할 수 있는 체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2. 신자유주의 비판

1) 신자유주의에서 발생하는 사유재산권 침해

신자유주의를 한 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생산요소와 요소소득에 대한 절대적 사유재산권을 옹호하고 자원배분은 시장에 방임하자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검토했듯이 토지에서 발생하는 지대에 대한 사유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다. 여기서는 지대에 대한 사유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신자유주의가, 진정한 사유재산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자**를 어떻게 지속적으로 침해하게 되는지를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살펴본다.

첫째, 지대의 사적소유는 공동체의 노력을 부정한다. 앞서 검토했듯이 지대의 증가는 사회발전의 결과이고 사회발전은 사회구성원의 노력의 결과이다. 그러므로 지대의 사유는 원칙적으로 공동체의 노력을 ‘가로챌 것’이나 다름없다.

둘째, 지대의 사유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은 국가가 도로, 공원, 학교, 경찰서와 같은 공공시설의 건설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발생한다. 먼저 공공시설 건설에 충당하는 자금의 원천을 살펴보자. 대개의 경우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조세로 충당하는데, 문제는 그 과세대상의 대부분이 토지보다는 ‘노동과 자본’이라는 데 있다. 개인의 노력에 조세를 부과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공공시설 주변에 있는 토지가격이 오르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이 과정을 형식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국가가 노력한 사람의 것을 빼앗아 토지소유자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세 번째로 지대의 사적소유가 노동소유권을 부정하는 것은 지대 혹은 지가의 투기적 상승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경험하듯이 토지사유제하에서 지대 혹은 지가는 투기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이 강하다. 투기적으로 상승한다는 것은 다른 몫, 즉, 노동의 임금과 자본의 이자의 몫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에 관해 이진순(1995, 16; 59)은 “지가 상승으로 인한 거품 가격의 실현은 체로섬 거래 활동에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였다. 즉, 토지를 통해 얻은 이익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김태동(1990, 38)도 “정해진 GNP를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등으로 나누는 분배 과정에서, 지대상승으로 인한 임차료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다른 생산 요소의 몫은 줄어들고 특히 경제적 약자인 근

로자의 몫이 제일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지대와 지가(地價)의 투기적 상승으로 버는 돈은 그 속성상 ‘불로소득’이라고 할 수 있는데,²²⁾ 이것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결국 이 소득이 비지주계층에서 주주계층으로 이전된 ‘이전소득’이라는 점이다. 불로소득이 없다면 생산소득에 대한 청구권은 생산에 참가한 각 경제주체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토지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이 발생하고, 토지 소유자는 필요한 경우 처분을 통해서 소득에 대한 청구권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소득에 대한 비지주계층의 청구권은 그만큼 제한될 수밖에 없게 된다(이정우 2006, 18). 비지주계층이 경제적으로 약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런 토지불로소득의 발생은 빈부격차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한국에서 이러한 토지불로소득이 얼마나 많이 발생했는지 살펴보자.

<표 2> 1980-90에 발생한 토지불로소득의 규모

A, B, C의 단위: 조원

연도	주요도시지가 상승률	전국지가총액	발생자본이득(A)	실현자본이득(B)	경상GNP(C)	A/C (%)	B/C (%)
1980	17.0	413.5	40.3	15.9(12.6)	36.7		43.3
1981	7.2	428.0	28.8	8.8(6.1)	45.5		19.3
1982	5.6	451.0	23.1	5.5(4.1)	52.2	44.2	10.5
1983	31.7	534.0	83.5	13.1(11.7)	61.7	1.35	21.2
1984	21.6	605.0	70.5	18.4(17.1)	70.1	1.00	26.2
1985	7.8	647.0	42.4	13.7(11.4)	78.1	0.54	17.5
1986	6.4	694.0	47.2	11.2(9.7)	90.6	0.52	12.4
1987	13.9	796.0	102.0	16.4(14.6)	106.0	0.96	15.6
1988	29.8	1,014.0	219.0	40.3(35.7)	126.2	1.73	31.9
1989	30.5	1,339.0	324.5	53.5(47.7)	141.8	2.28	37.7
1990		1,614.0	274.8				

주: B의 괄호는 도시에서 실현된 자본 이득

자료: 주요 도시지가 상승률 = 이진순(1990, 63); 전국지가 총액, A = 김태동(1993 62); B, C = 이정우(1991, 338)

<표 2>에 따르면 토지투기가 한참 기승을 부리던 1988-9년에는 실현된 토지불로소득의 규모가 경상 GNP의 30%를 넘어 4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표 3>에 따르면 2001-2003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토지 자본이득이 212조 원에 달하고, 연평균 약 70조 원에 달하는 토지 자본이득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처럼 천문학적 규모의 불로소득이 극소수의 토지 과다 소유자들에게 집중되었을 가능성이

22) 토지를 통해서 얻는 소득 앞에 ‘불로(不勞)’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에 대해서 다른 소득도 불로소득적 성격이 있다고 반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불로소득은 사회적 기여가 분명히 있지만, 토지불로소득은 인정해준다고 해서 사회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막대한 폐해만 끼친다. 자세한 내용은 김윤상(2004, 50-54)을 참조하라.

<표 3> 1999-2003에 발생한 토지블로소득. 단위: 조원, %

연도	지가총액	지가상승률	자본이득(A)	명목 GDP(B)	A/B
1999	1483.6	2.94	42.4	529.5	8.00
2000	1493.6	0.67	9.9	578.7	1.72
2001	1513.3	1.32	19.7	622.1	3.17
2002	1649.2	8.98	135.9	684.3	19.86
2003	1705.7	3.43	56.6	721.3	7.84

자료: 전강수(2005, 13)

매우 크다는 점이다.²³⁾

결국, 토지블로소득이 토지소유자에게 독점(獨占)되는 현재의 토지사유제 아래서, 그리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는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 토지 투기로 인해서 지가가 앙등(仰騰)하게 되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한 서민들은 더 가난해지고 극소수의 토지과다소유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더 부유해지게 되는 것이다.

2) 경제적 효율성 비판

흔히 신자유주의는 형평성 보다는 효율성에 방점을 찍은 체제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검토해보면 신자유주의는 그리 효율적이지 못한 체제이다. 신자유주의가 토지소유권에서 정당성이 결여되어있다는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 체제의 비효율성을 토지를 중심으로 해서 평가해보자.

첫째, 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생명으로 삼고 있는데, 신자유주의에서 토지라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살펴보자. 자원배분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소유자 = 효율적 사용자”라는 등식이 성립해야 한다. 그러나 토지사유제는 이 등식을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토지는 대부분의 경우 자본과는 달리 가치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감가(減價)되는 자본의 경우에는 효율적 사용자가 아니면 손해가 되므로 소유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토지처럼 증가(增價)되는 경우에는 ‘사적인 차원’에서 이익이 되므로 효율적 사용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하려고 한다. 그리고 이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자들 중에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유희화시키거나 저밀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매매를 손쉽게 하여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토지사유제 하에서는 비효율적 배분의 결정적 증거인 토지의 유희화나 저밀도사용이 일상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토지와 관련해서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는지 살펴보자. 시장은 유기체와

23) 2006년 10월 행정자치부의 발표를 보면 전체인구 4878만 명 가운데 1%를 조금 넘는 50만 명이 민유지의 5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가구별로 보면, 우리나라 1785만 가구 가운데 40.1%를 차지하는 715만 가구는 송곳 하나 꽃을 만할 땅 한조각 조차도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통계를 요약하자면 ‘극심한 토지소유편중’이라 할 수 있다.

같이 토지소유방식의 차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영역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생산요소인 토지에서 많은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자금이 토지에 몰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자본과 노동, 혹은 저축으로 유도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토지에 자금이 몰리는 것은 경제적으로 전혀 생산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토지에 대한 투자는 무엇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한사람은 팔고 또 한사람은 사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Gaffney 1994, 66). 반면에 자본과 노동에 대한 투자는 생산적이다. 그리고 이 둘은 서로 대칭적이어서 노동에 대한 투자는 자본에 대한 투자를, 자본에 대한 투자는 노동의 고용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이 두 부분에 대한 투자는 사회 전체의 부(富)의 증가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토지에 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을수록 자금배분의 효율성은 낮고, 그렇지 않을수록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토지사용제를 평가해보자. 일반적으로 토지사용제 하에서 토지가격의 투기적 상승이 예상되면 많은 자금이 토지로 몰리게 되는데, 바로 이런 것이 신자유주의에서 나타나는 자금의 비효율적 배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뿐 아니라 토지사용제 하에서 나타나는 토지가격의 ‘투기적 상승’은 금융기관의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배분시키는 원인이기도 하다. 담보를 통해서 민간에 대출된 자금이 생산적인데 투자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토지를 구입하는 데 쓰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증가는 지가(地價)의 투기적 상승과 상호촉진관계에 놓이게 된다. 즉, 지가의 투기적 상승은 대출을 증가시키고 대출의 증가는 다시 지가를 증가시킨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상당한 자금이 생산적인 부분이 아닌 비생산적인데 매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²⁴⁾ 이처럼 토지사용제는 자금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세 번째로 시장의 형태로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을 검토해보자. 일반적으로 시장이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독점이 아니라 경쟁시장에 가까워야 한다. 왜냐하면 독점시장은 독점가격을 낳고, 독점가격은 경쟁시장에서보다 적은 생산량으로 더 많은 이윤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자유주의의 토지사용제는 비효율적인 독점시장을 강화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먼저, 토지사용제 하에서는 높은 지가가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독점시장의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토지의 가격은 미래의 지대를 현재 시점으로 할인해서 모두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가(高價)이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모든 사람의 토지소유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목돈이 없는 자의 접근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진입장벽의 높고 낮음이 시장형태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토지사용제는 독점시장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사용제 하

24) 투기적으로 상승하는 지가의 상승추세가 둔화되거나 멈추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토지담보대출을 꺼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대출자금의 상당부분을 토지투기에 쏟아왔던 기업들은 자금이 토지에 잠기게 되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고, 담보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받아왔던 기업들도 자금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한다. 그 뿐 아니라 시장의 이와 같은 상황들은 토지가격하락을 초래하기 쉬운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금융기관들은 담보대출을 기피하는 것을 넘어서 그동안 대출했던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한다. 이런 일련의 상황전개는 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 기업의 연쇄도산과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결국 불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자세한 내용은 Harrison(1983), Gaffney(1994, 89-94), 전강수(2000, 199-202)를 참조하라.

에서 토지독점이 발생하기 쉽다는 것도 독점시장의 원인이 된다. 토지소유자는 금융기관에 쉽게 접근하여 더 많은 토지를 소유할 수 있다. 시장진입을 위해서 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결국 토지독점의 심화는 자본독점, 더 나아가 독점시장의 강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⁵⁾

마지막으로 조세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을 검토해보자.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시장의 기능은 생산자에게 생산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생산자간의 자발적인 교환을 보장할 때 극대화된다. 이런 점에서 보면 세금은 대체로 반(反)시장적이다. 세금의 주요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부가가치는 노력의 소산이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면 생산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시장과도 상치된다. ‘상품과 서비스의 교환’으로 정의되는 시장은 철저하게 대가성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세금은 납세하는 자가 그 만큼의 대가를 국가로부터 받는지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즉 ‘대가성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참여자들은 되도록이면 세금을 회피하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지하경제의 발생원인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신자유주의를 토대로 하고 있는 국가(사회)라 하더라도 운영자금이 필요하므로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토지사유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자본과 노동에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격체계를 왜곡시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저해한다.²⁶⁾

이상에서 보면 신자유주의는 상당히 비효율적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이런 비효율성의 진원지가 소유의 정당성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토지라는 점에 있다. 한편 우리는 위와 같은 검토를 통해서 지공주의의 하나의 특성인 토지에서의 평등, 즉 지대의 공유는 신자유주의에서 보이는 이러한 비효율성을 제거해준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3) 토론: 신자유주의와 실업문제

신자유주의에서 ‘이론상’ 국가의 개입이 없는 시장에서는 ‘실업’이란 사태가 발생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임금도 노동시장의 수급조절을 통해 자연스럽게 결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불펜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되고 그 가격에 따라 매매가 이뤄지면 공급과잉이란 현상은 사라지듯이, 노동시장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면 실업문제(노동공급과잉)라는 현상은 사라지게 된다. 스티글리츠(Stiglitz 2002, 83)가 말하듯 “노동에 대한 수요가 공급과 일치한다면 비자발적 실업이란 없다. 현재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일하지 않기로 작심한 것이다.”

25) 이런 것은 처칠의 연설과 마르크스의 말에 잘 표현되어 있다. 처칠(Winston. Churchill)은 어느 연설에서 “토지독점은 존재하는 유일한 독점이 아니지만, 단연 최고의 독점이다. 그것은 영원한 독점이며 다른 모든 독점의 형태의 어머니”라고 하였다(Kyriazi 2000, 52에서 재인용). 한편 마르크스도 “오늘날의 사회에서 노동수단은 토지 소유자(토지소유의 독점은 더구나 자본 독점의 토대이다)와 자본가의 독점이다.”(Marx 1995, 373. 강조는 필자)라고 할 정도로 토지독점이 자본독점, 독점시장의 주된 원인임을 주장하였다.

26) 신자유주의의 비효율성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는 남기업(2004, 111-124)을 참조하라.

이런 원리로 보면 현재 한국사회의 실업문제는 전적으로 ‘높은 임금’에 있다.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즉 노동자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노동의 과잉공급이 발생하는 반면, 같은 이유로 고용주인 자본가의 노동에 대한 수요가 낮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자유주의 입장에서 한국 사회에서 실업이 발생할 정도로 왜 임금이 높은 것인가? 그것은 노동조합 등이 단결하여 임금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다. 즉 현재 고용된 노동자의 이기심 때문에 실업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독점하고 있는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가 해체되든지, 아니면 노동조합이 스스로 알아서 임금을 내리든지, 그도 아니면 인위적 실업을 조장하는 ‘최저임금제’와 같은 것을 폐지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을 살펴보아야 한다.

3. 신자유주의의 극복대안 지공주의: 자유와 평등의 새로운 합주

1) 신자유주의에서 지공주의 로의 이행 전략: 패키지형 세계개혁

‘패키지형 세계개혁’은 현재의 신자유주의에서 지공주의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이다. 패키지형 세계개혁을 한마디로 말하면 토지 사용료인 지대의 환수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은 지속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지대를 국가가 전부 조세로 환수하면 매매가격, 즉 지가는 제로(0)가 된다. 왜냐하면 지가는 토지 소유로부터 생기는 수익에 의해 결정되는데,²⁷⁾ 국가가 지대를 다 징수하면 소유자에게는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최소한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하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고, 따지고 보면 이것도 일리가 있는 주장이므로 이를 위해 지대이자차액세를 도입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국가가 전체 지대 중에서, 토지 소유자에게, 매입지가 혹은 제도 시행 시점의 지가에 대한 이자는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조세로 환수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가는 고정된다. 이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우리는 어떤 자산이 매년 일정 금액의 수익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될 때 그 자산의 원본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다. 그 고정 수익을 이자율로 나누면 된다. 만일 토지 소유자가 얻는 수익이 매입지가(혹은 제도 시행 시점의 지가)의 이자라면, 그 토지의 원본가치는 다름 아닌 매입지가(혹은 제도 시행 시점의 지가)가 될 것이다. 이처럼 지대이자차액세는 지대와 이자의 차액을 조세로 징수하면서 땅값을 일정 시점의 수준으로 고정시켜 주는 것이다.²⁸⁾ 그리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일정시간이 지다면 지대 중에서 이자에 해당되

27) 정확하게 말하면 땅값은 미래에 토지 소유로부터 발생할 모든 수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합한 값과 같다.

28) 예를 들어, 매년 100만 원의 고정수익이 생기는 기계가 있다고 하고, 은행 이자율은 5%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이 기계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 그것은 고정수익을 이자율로 나눈 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즉 100만원/0.05

는 부분도 서서히 환수하게 되면 지가는 경향적으로 저하되게 된다.

지대의 환수비율을 높이면서, 즉 토지에 대한 평등의 정도를 높이면서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것, 즉 자유의 정도를 높이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하면 된다. 초기 단계에서는 건축 활동을 저해하고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다른 부동산 조세(건물분보유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의 거래세)들을 감면하고, 다음단계에서는 생산 활동 또는 그 결과에 부과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을 감면한다. 이렇게 하면 아래에서처럼 투기는 막으면서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

2) 지공주의에서의 자유와 평등은 어떻게 결합하는가?²⁹⁾

(1) 공평한 분배가 이루어진다

① 토지분배의 평등화

지공주의로 전환되면 토지보유자와 실수요자가 일치하는 경향이 확대된다. 농지로 말하면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확립된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토지의 분배 상태는 상당히 평등해질 것이다. 물론 토지소유가 완전히 평등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토지를 필요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돈 벌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는 자가 없어지기 때문에 토지배분의 평등화 효과가 상당하다 할 수 있다.

② 빈부격차의 완화

지공주의로 전환되면 토지가치가 상승해도 그 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가지 않고 공적으로 환수된다. 따라서 토지불로소득으로 인한 소득과 부의 분배의 악화가 시정된다. 앞의 표 2와 3에서 볼 수 있듯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는 원인 중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는 점을 생각하면, 빈부격차는 크게 시정될 것이다.

(2) 생산성이 높아진다

① 토지의 최선사용

= 2,000만 원이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원리로 지대와 이자의 차액을 환수하는 지대이자차액세를 적용하는 토지도 고정수익만 발생하기 때문에 지가(地價)가 고정된다. 예를 들어, 어떤 토지의 가격이 1억 원이라고 하고, 이자율이 5%라고 하자. 그리고 그 토지가치인 지대가 2006년 450만 원, 2007년 500만 원, 2008년 510만 원, '09년 530만 원...이렇게 계속 상승한다고 하자. 이런 상태에서 지대에서 이자부분만을 빼고 환수하는 지대이자차액세를 적용하게 되면 토지가격 1억 원에 대한 이자인 5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세금으로 환수되는 것이다. 즉, '08년 10만 원(510-500) 환수, '09년 30만 원(530-500) 환수... 이렇게 하게 되면 그 토지에서는 앞으로 계속 500만 원의 고정수익밖에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 토지의 가격은 1억 원으로(500만 원/0.05 = 1억) 고정되는 것이다.

29) 이 부분은 김윤상(2004, 74-80)을 요약했다.

지공주의로 전환되면 토지를 저사용(under-use) 상태로 방치할 경우 손실을 입기 때문에,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적정 용도로 개발하거나 토지(혹은 토지 사용권)를 매각하게 될 것이다. 그 결과 토지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용도로 사용되게 된다.

② 생산의욕의 고취

앞서 살펴본 것처럼 불로소득의 기회가 많은 사회에서는 자금이 생산적인 부문보다는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투하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하여 불로소득의 액수가 커지면 사회구성원들은 열심히 일할 의욕이 사라지고, 절약·저축하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지공주의 하에서는 토지소유로 인한 불로소득 기회가 근절되므로 자연스럽게 생산의욕이 높아진다. 그리고 생산, 유통, 소비, 소득 등의 생산 활동에 대한 조세가 감면될 것인데, 이것은 한층 더 생산의욕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

③ 신(新)기업 창업 용이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기업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자유주의에서 높은 지가는 새로운 기업의 시장진입을 장애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나 지공주의에서는 지가가, 지대이자차액세를 적용할 시에는 안정되고, 지대를 모두 환수할 시에는 제로에 가깝게 됨으로 시장참가의 자유는 획기적으로 **증대**되어, 결국 생산이 촉진된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와 임금도 자연스럽게 증가되어 실업난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3) 개발의 효율성과 민주성이 증진되고, 주택문제도 크게 완화된다

① 공공개발의 효율성과 민주성

지공주의 하에서는 공공개발이 효율적으로 수행된다. 공공개발을 할 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엄청난 토지보상액과 그것을 둘러싼 집단민원이다. 그런데, 지공주의 하에서는 토지보상비가 거의 들지 않고, 개발이익은 환수되기 때문에 이것을 둘러싼 집단민원의 해결은 쉬워진다. 그리고 지공주의 하에서 개발 때문에 토지가치가 하락할 시에는 환수하는 양도 자동적으로 하락하기 때문에, 땅값하락으로 인한 님비현상도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지공주의 하에서는 공공개발의 민주성을 높여준다. 정부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비밀리에 준비하여 기습적으로 단행하는 경우가 많고, 그 개발정보를 둘러싸고 각종 비리가 발생하는데, 지공주의 하에서는 개발이익이 공공에 의해 환수되기 때문에 이런 관행은 사라진다. 이런 메커니즘이 작동하기 때문에 지공주의 하에서 국가는 개발계획을 사전에 충분히 공개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계획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 주택 문제의 완화

한국의 주택난의 주요 원인은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 결혼해서 20년 가까이 일해야 자기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사회다. 그런데, 지공주의 하에서는 신규로 분양된 주택가격이 50% 이상 하락한다. 왜냐하면 주택가격의 50% 이상이 바로 토지가격인데, 그 가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또한 지공주의 하에서는 주택공급도 쉬워지는 데 그 이유는 택지가격이 대폭 낮아지고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방치하는 일이 불가능해지므로 택지 공급도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상당히 앞당겨지게 된다.

4. 기존체제에서 지공주의로의 전환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 측정

티드먼(N. Tideman)과 플래스먼(F. Plassman)은 G7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 조세수입을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토지 및 자연자원에 대한 과세를 늘이고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계개혁, 즉 지공주의로의 전환을 단행할 경우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실증 연구를 수행한 바 있는데, 그것을 표로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 4> 지공주의로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예상되는 국내순생산의 변화:1993년

구 분	기존체제(A)		지공주의(B)		B/A(%)
	NDP (십억 달러)	일인당 NDP(달러)	NDP (십억 달러)	일인당 NDP(달러)	
미 국	5,495	20,894	7,097	26,986	129
캐 나 다	490	16,348	765	25,490	156
프 랑 스	952	16,409	1,831	31,575	192
독 일	1,178	14,370	2,196	26,776	186
이탈리아	892	15,460	1,707	29,588	191
일 본	2,134	17,071	3,669	29,355	172
영 국	883	14,972	1,599	27,105	181

출처: Tideman · Plassman(1998, 147)

<표 5> 지공주의로 전환되었을 경우 예상되는 초과부담의 감소와 저축률 · 자본스톡의 변화

구 분	초과부담 감소		저축률(%)		자본스톡의 증가(%) (1993-1998)
	금액 (십억 달러)	대 NDP 비율(%)	기존체제	지공주의	
미 국	784	14	3.4	8.2	31
캐 나 다	141	29	5.6	14.6	29
프 랑 스	457	48	7.2	18.8	31
독 일	531	45	15.2	38.6	60
이탈리아	451	51	9.3	20.3	18
일 본	699	33	19.6	57.4	106
영 국	352	40	3.8	10.0	19

출처: Tideman · Plassman(1998, 148)

표 4, 5에 따르면 각 국가에서 지공주의로 전환 후 국내순생산(NDP)이 작게는 29%, 많게는 92% 증가할 것이며, 초과부담은 작게는 14%, 많게는 5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각 국가의 저축률도 크게 증가할 것이며, 자본스톡은 세계개편 후 5년 간 작게는 18%, 많게는 10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³⁰⁾

3) 토론: ‘증세’와 ‘감세’의 새로운 결합으로서의 지공주의

올 초부터 한국사회에서는 ‘증세’논쟁이 지속되어왔고, 현 정부가 서구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듯한 『비전 2030』 보고서를 발간함에 따라, 그 논쟁은 더욱 가열되어 왔다. 증세에 반대하는 자들, 흔히 보수층이 주장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증세하면 경제의 모든 영역에서 활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증세는 결국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자들에게 혜택을 베풀겠다는 것이지만, 이렇게 되면 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대한 기대치가 줄어들게 됨으로, 결국 투자기피 → 실업발생 → 복지수혜자의 수 증가 → 더 많은 세금 → 투자기피 … 과 같은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제시하는 방안은 감세이다. 감세를 하게 되면 투자가 **확대되어** 경제가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세수가 증가된다는 논리이다.

증세를 옹호하는 자들은 감세하면 결국 성장의 과실이 부유층에게만 집중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들은 한국의 복지비가 선진국에 비해서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시장에서 열패자들이 수도 없이 양산되는 데 이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국민 전체의 삶의 질, 즉 복지수준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재정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복지시스템을 강화하면 사회가 안전해지고 사회적 유대감이 강화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더 높게 유지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다.

30) 실제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고 다른 세금을 감면하는 패키지형 세계개혁은 20세기 전(全) 기간에 걸쳐서 전 세계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현되어 놀라운 경제적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강수·한동근(2000, 116-158)을 참조하라.

그런데, 지공주의의 내용과 효과를 잘 살펴보면 증세론자와 감세론자들이 우려하는 걱정을 덜어주면서 그들이 바라는 바가 동시에 달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지공주의가 증세와 감세를 새롭게 결합하는 ‘조세이동(tax shift)’을 통해서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기존의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지공주의로의 전환의 한 모습인 지대의 환수비율 강화, 즉 ‘토지보유세 강화’라는 증세의 효과를 살펴보자. 익히 알려진 증세와는 달리, 토지 부분에서의 증세는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 다시 말해, ‘증세의 인과체인’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와 생산이 유도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한다. 이것은 증세를 반대하는 자들의 걱정을 해소시켜준다.

지공주의로의 전환의 또 다른 모습인 감세의 효과를 검토해보자. 토지보유세 강화와 더불어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각종 세금을 감면하게 고용이 창출되면서, 다시 말해서 실업 문제가 해소되는 동시에 토지불로소득 때문에 발생했던 빈부격차가 제거되기 때문에 감세를 반대하던 자들의 걱정이 해소된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에서 지공주의로의 전환의 핵심은 ‘복지수혜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여준다는 데 있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지공주의로의 전환은 증세와 감세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를 새로운 방법으로, 동시에 만족시켜준다고 할 수 있다.

IV.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한국교회의 대응과 과제: 결론을 대신하여

7-80년대의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 과제인 ‘민주화’에 남다른 헌신을 보여주었고 80년대 후반 들어서 이러한 열정은 시민운동으로 전화(轉化)되었다. 전화의 밑바탕에는,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되었으니, 다음으로는 사회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뜻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서도 서술하였지만 우리사회 구석구석의 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빵의 문제, 경제문제와 만나게 된다. 따라서 경제문제의 해결 없이는 우리 사회의 각 부문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장 생겨나는 노숙자 문제, 쪽방 문제, 실업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연히 노력해야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계층이 나오게 된 근본원인을 제거하는데 우리의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강도만난 이웃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강도가 출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³¹⁾

31) 혹자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마26:11)라는 말씀하셨으므로 이 세상에서 가난을 제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는 같은 성경에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정녕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신 15:4, 강조는 필자)는 말씀이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

해결의 순서가 이와 같다면 지금까지 왜 한국기독교는 강도 나오지 않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주어진 역량을 집중시키지 않았을까? 필자가 보는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 대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제시된 대안들이 지나치게 추상적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까지 기독교 내에서 강도 나오지 않게 하는 대안으로 “사회참여를 해야 한다”, “공의를 구하라”, “공평이 우리 사회에 뿌리박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와 같은 주장들이 선포되어 왔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이런 주장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수미일관된 논리를 갖춘 구체적인 전략’까지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모호한 추상적 언어는 여러 가지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공의를 ‘왜(why)’ 이루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how)’ 이룰 것인가, 즉 ‘방법’인 것이다.

그렇다고 필자가 지금까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분투한 많은 운동들을 과소평가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 운동들은 나름대로 한국사회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필자가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서론에서 설명했듯이 진정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데, 이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아직 구체적인 형태로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공의’, ‘공평’, ‘인애’와 같은 추상적인 언어가 ‘정치경제학적 언어’로 육화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정치경제학’은 진정한 사회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 보여야 하고, 그것이 사회 각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아울러서 그것의 해결방안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필자는 한국 기독교가 이것에 대한 합치된 견해를 바탕으로, 지금까지 힘차게 진행해온 각 부문의 사회운동과 사회문제의 뿌리에 해당하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운동 간에 새로운 ‘화학적 결합’이 일어나야 한다고 본다.

두 번째 이유는 앞서 검토한 것처럼 강도 나오지 않게 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인 지공주의가 성경이 말하는 것에 상당히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왜지 교회에서 전파하기가 부담스럽다는 데 원인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의 정신은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자, 모든 인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것은 성경이 아니라 일반의 언어로도 충분히 설명되지만, 그리고 지공주의로의 전환이 이웃의 고통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지만, 막상 교회에 들어가 보면 토지(부동산)를 통해서 큰 재산을 모은 사람이 교회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은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구제하고 선교하자고 하면 모두 적극적으로 찬동한다. 하지만 공의를 선포하는 것, 그것도 추상적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하는 공의를 전파하는 것에는 난색을 표시한다. 그러나 “이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교회는 공의의 복음, 가난한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해야 한다. 또 그것을 전파하지 않아 우리의 수많은 이웃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가 강도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한 이유는, 강도를 나오지 않는 방법이라고 제시되어온 지공주의 사상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혹은 이것이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보기 때문일 수 있다**. 현재 기독교 내에 지공주의에 대한 입장은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지공주의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부류, 두 번째는 지공주의는 문제가 많으므로 지금과 같은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는 부류, 세 번째는 지공주의 대안이 부족함을 주장하면서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류이다. 이것을 하나씩 검토해 보자.

지공주의를 사회주의로 오인하는 부류는 기독교 내에 주로 연세가 든 일반성도나 목회자일 것이다. 이 분들은 지공주의가 과거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국민의 토지를 모두 빼앗아 국유화 하는 체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전술했다시피, 지공주의는 사회주의처럼 토지를 국유화 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서 나는 이익인 지대만을 공유하고, 토지의 배분을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맡기는 것이다. 또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현재의 지가를 그대로 인정하는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그 뿐 아니라 지공주의는 노력한 것에 대한 더 많은 사적 소유를 인정하라고 주장한다. **요컨대, 지공주의야말로 진정한 사유재산권과 시장경제를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공주의를 사회주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그야말로 ‘오해’인 것이다.

두 번째로, 현재의 신자유주의를 옹호하고 지공주의가 문제가 많다는 부류는, 첫 번째 부류와도 잘 결합하는 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한 정당성이 결여된 토지사유제의 폐해를 검토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이웃을 고통스럽게 하는지 더 자세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공주의가 대안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에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류에 대해서는, 앞서 검토했듯이 복지국가의 막대한 복지비용을 어디서 충당하는 것이 효과적인지를 검토해보라고 주문하고 싶다. 복지국가 입장에서 보면, 지공주의는 복지비용을 지대를 통해서 충당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여기서 지공주의의 복지비용 확충은 복지국가처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킴과 동시에 형평성까지 담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복지수혜자의 수가 현저하게 줄게 된다. 다시 말해, 지대환수를 통해 복지재정을 마련하면서 복지지출의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국가를 대안으로 상정하고 있는 쪽에서는 지공주의에서 중요하게 보는 토지 문제가 단지 주택문제에만 연관되어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서 검토했듯이 토지는 경제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복지국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지공주의가 ‘자본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문제제기 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은 일리가 있기는 하지만, 자본에서 토지를 제외해 놓고 자세히 검토해보면 우려하는 바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자본에서 토지를 제외시켜놓고 생각해보면, 흔히 우리가 시장에서 발생하는 빈곤, 실업, 독점, 심지어 환경문제 등의 주된 원인이 ‘자본’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뿐 아니라 토지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자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

치는 지금보다 훨씬 쉬워질 것이다.³²⁾ 필자는 기독교 내에서 어떤 방법이 강도 나오지 않게 하는 최선의 것인지를 심도 있게 검토해 보았으면 한다.³³⁾

지금까지 필자는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과 문화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생각 하에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면서 경제적 자유를 확대시키는 대안으로 ‘지공주의’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를 통해서 필자가 말하려는 바는 지공주의 체제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정치적 평등과 문화적 평등은 상당한 정도로 담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민주화 이후에 우리 사회 각 부문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분출하고 있는데, 그것은 모두 경제문제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장 발생하는 퇴폐 향락문화를 막고 대안 문화를 창출하는 일, 노숙자와 실직자 등의 불우이웃을 돕는 일, 그리고 정치적 평등에 손상을 입히는 불법선거 등을 막기 위한 운동도 중요하고 유의미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 근본적 원인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 땅에 교회는 회년에 근거한 지공주의를 “이것이 정말로 그러한가”하는 마음으로 검토하고, “정말로 그러하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면 지붕에 올라가서 함께 외쳐야 할 것이다.

필자는 이런 상상을 해 본다. 만약 부활절 연합예배 때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과 전국 각 주요도시의 연합예배 장소에서 지공주의의 뿌리인 회년을 실시하라고 외치게 되면 한국 사회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고. 이렇게 되면 세상이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이것이 정말 의미 있는 것은, 이렇게 하려면 교회가 진정한 회개를 해야 한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교회가 회년을 선포하지 못하고 부동산 투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을 ‘회개’해야 비로소 회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悔改)란, 말 그대로 뉘우치고(悔) 고치는 것(改)이다.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교회의 회년 선포는 오늘날 침체되고 타락한 한국기독교를 다시 한 번 회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2) 세계화가 심화됨에 따라 단기성 투기금융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외환위기에서 확인되듯이 이런 투기자금은 한 나라의 경제를 위태롭게 하기도 한다. 필자는 지공주의 체제로 전환했다 하더라도 이런 것에 대한 국가의 적절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경제체제를 지공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이런 단기성 투기금융의 위험에 덜 노출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90년대 동아시아 국가에 투입된 단기성 투기금융의 대부분은 부동산 투기에 투입되었고(Stiglitz 2002, 182-184) 이것이 바로 위기의 주된 원인이었는데, 지공주의로 전환하게 되면 부동산 투기는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33) 물론 지공주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그런 체제는 아마도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등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공주의는 “토지의 가치를 공유해야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다른 체제나 사상과 결합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서 검토했듯이 지공주의가 현재 우리가 직면한 문제의 상당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참고문헌>

- 강신욱, “John Roemer의 분석적 맑스주의 경제이론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8
- 김남두, “소유권에 관한 철학적 성찰 - : 사유 재산권과 삶의 평등한 기회 - 로크를 중심으로 -,”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Vol. 27 (1990)
- 김비환, 『자유지상주의자들, 자유주의자들, 그리고 민주주의자들: 기본권을 통해 본 시장과 민주주의』, (서울: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5)
- _____, “현대 자유주의적 평등론의 역사적 의의,”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Vol. 5, No. 2
- 김윤상, “지공주의(地公主義)를 옹호한다 - 자유주의자의 비판에 대한 반비판,”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비평』, 2005년 가을호
- _____, 『알기 쉬운 토지공개념』, (대구: 경북대출판부, 2004)
- _____, “토지소유제도와 사회정의철학,” 『한국행정과정책』, Vol. 1. No. 1(2003)
- 김태동, “韓日 兩國經濟에서의 資産價格變動과 거품의 相互比較,” 成均館大學校, 『韓國經濟』 Vol. 20. No. 1 (1993.9)
- 남기업, “헨리 조지(Henry George)의 대안적 경제체제 연구: 소유의 정당성, 효율성, 환경친화성에 관한 비교 검토”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4.
- 류동민, “노동시장분석의 미시적 기초.” 한국사회경제학회(편), 『가치이론 논쟁: 정치경제학의 새로운 모색을 위하여』, (서울: 풀빛, 1995)
- 박호성, 『평등론』, (서울: 창작과비평사, 1994)
- 이재율, 『경제윤리』, (서울: 민음사, 1995)
- 이정우, “韓國의 富, 資本利得과 所得不平等,” 서울대학교, 『經濟論集』, Vol. 30 No. 3 (1991. 9)
- _____, “비교관점에서 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6. 1)
- 이진순, “우리나라 地價形成의 特性,” 한국토지공사, 『土地研究』, Vol. 1 No. 6 (1990. 12)
- 전강수·한동근 『토지를 중심으로 본 경제 이야기』, (서울: CUP, 2000)
- 전강수, “양극화 해소를 위한 토지정책 방향,” <토지정의시민연대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5. 2)
- 홍성우, “칸트 윤리학에 관한 롤즈적 해석,” 국제문화학회, 『역사와 사회』, Vol. 1, No. 6
- 황경식, “분배적 정의의 기준,” 환경식(편),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7)
- Aristotle, *Politics*, 『정치학』, 나종일·우병희(역), (서울: 삼성출판사, 1992)
- Dahl, Robert, *On Democracy*, 김왕식·장동진·정상화·이기호(공역), 『민주주의』, (서

- 울: 동명사, 1999)
- Cohen, G. A., "Self-Ownership, World-Ownership, and Equality," Lucash, Frank S., (ed.), *Justice and Equality Here and Now*,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86)
- Harrison, Fred, *The Power in the Land : An Inquiry into Unemployment, the Profits Crisis and Land Speculation*, (New York: Universe Books, 1983)
- Gaffney, Mason, "Land as a Distinctive Factor of Production", in N. Tideman ed., *Land and Taxation*, (London: Shephard-Walwyn, 1994)
- Kyriazi, Harold, *Libertarian Party at Sea on Land*, (New York: Robert Schalkenbach Foundation, 2000)
- Locke, John, *Two Treatises of Government: The Second Treatise of Government - An Essay Concerning the True Original, Extent, and End of Civil-Government*, 이극찬(역), 『통치론』, (서울: 삼성출판사, 1990)
- Marx, Karl, 최인호(역) "고타 강령 초안 비판."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저작선집 4』, (서울: 박종철출판사, 1995)
- Meek, Ronald, *Studies in the labour theory of Value*, 김제민(역), 『노동가치론의 역사』 (서울: 풀빛, 1985)
- Nozick, Robert, *Anarchy, state, and utopia*, 강성학(역), 『자유주의 정의론』, (서울: 大光文化社, 1991)
- O'Neill, Onora. *Constructions of Reas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9)
- Rawls, John, *A Theory of Justice*, 황경식(역), 『사회정의론』, (서울: 서광사, 1985)
- Ricardo, David, *On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 and Taxation*, 정운형(역) 『정치경제학 및 과세의 원리』, (서울: 비봉출판사, 1991)
- Roemer, John E., *Free To Loss*,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88)
- Rousseau, Jean-Jacques, *The Social Contract*, 이가형(역), 『사회계약론·상식·인실론』, (서울: 을유문화사, 1994)
- Smith, Adam,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김수행(역), 『국부론 (상)』, (서울: 동아출판사, 1998)
- Sreenivassan, Gopal, *The Limits of Lockean Rights in Property*, (New York,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Stiglitz, Joseph E.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 송철복(옮김), 세계화와 그 불만, (서울: 세종연구원, 2002)
- Tideman, Nicolaus & Plassmann, Florenz, "Taxed Out of Work and Wealth: The Costs of Taxing Labor and Capital," in Harrison, Fred (ed.), *The Losses of*

Nations - Deadweight Politics versus Public Rent Dividends, (Manchester:
Othila, 1998)